

# 예산총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86,311,848	17,589,355
일반회계	540,987,924	16,229,638
특별회계	45,323,924	1,359,718
공기업특별회계	10,960,063	328,802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0,960,063	328,802
기타특별회계	34,363,861	1,030,916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512,120	45,364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484,296	44,52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32,119	24,964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956,899	28,707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15,093,000	452,790
수질개선 특별회계	7,884,806	236,544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6,600,621	198,01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073,519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2,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